

# 프랑스 68운동이 주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이성엽\* (아주대)

---

---

■ 요약 ■

본 연구는 대학 위기에서 반발했던 프랑스 68운동을 통해, 현재 한국 고등교육 정책에 주는 올바른 의미와 방향을 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프랑스 68운동의 배경 및 전개과정을 서술하며, 1968년 5월 이전과 이후의 프랑스 고등교육 체계 및 환경을 비교하였고, 이에 맞서 1995년 이후 근본적 변화됨이 없는 한국 고등교육 체계와 제도의 위기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68운동의 평생교육학적 접근과 의의를 두고 문헌조사 및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전히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가 엄격하고 학령기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위기를 인식하려는 시도를 했다.

또한 프랑스 68운동 이후 새로이 구축되어진 프랑스 대학기관 및 법제 그리고 대학 입학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의 포용정책 사례를 통하여,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가 엄격한, 한국 대학이 가져야 할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기능의 유연성과 질 관리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68운동과 다른 양상으로 대학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을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모색했다.

[주제어] 프랑스68운동, 고등교육, 평생교육

---

---

---

\* 제1저자,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hicoach@ajou.ac.kr

## I. 서론

프랑스 ‘68운동’<sup>1)</sup>은 대학 공간의 협소함, 대형 강의 범람과 암기식 교육에 의존하는 교수들의 상투적 강의, 행정의 중앙 집중화와 관료주의,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적 관계, 부족한 대학 교원 수의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기존 체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새로운 창의성과 상상력의 확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개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이성재, 2009, p.17). 그런데 68운동이 프랑스 내에서의 한정된 변화만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다. 독일·이탈리아·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적 사상 운동이 되어, 독일 및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기업 내의 의사결정 참여와 교섭 권한을 확보하였고, 미국에서는 록 음악의 열정과 저항 정신을 한 목소리에 담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국제 반전의 날’에 학생들이 집결해 베트남으로 가는 무기와 탄약 그리고 병력 수송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여성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 ‘내 배는 내것이다’(이성재, 2009, p. 97) 라는 유산권 구호를 통해 낙태를 허용하는 베이법(Veil)<sup>2)</sup>까지 프랑스 국회에서 1975년 가결되었다. 따라서 68운동은 예술 문화<sup>3)</sup> 및 탈근대 사고체계가 확연히 변화된 사건으로 언급된다(신승환, 2015).

특히 프랑스 ‘68운동’은 프랑스 드골 내각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학생 시위로(신승환, 2015), 새로운 교육정책 의견을 개진하며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에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당국은 대규모 집회를 우려해 대학을 폐쇄 시켜 버렸고,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학생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던 와중, 1968년 5월 3일 폐쇄된 낭테르 대학을 대신하여,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527여명의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집회를 하였고 이러한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경찰과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이때, 지금까지 문제 되었던 불충분한 교육행정과 학사과정, 그리고 사회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교과 과정, 현대화 되지 못한 교수법 등 각종 교육 정책들 또한 언급되었다(Antoine Prost: 민유기, 2013, 재인용).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당국은 결국 1968년 5월 19일 드

1) 1968년 발생하였던 전 세계적, 대규모의 학생, 노동자, 시민운동에 대한 통일된 명칭은 없으며 ‘1968년 세계 혁명(Wallerstein, 2004)’, ‘1968(Ali & Watkins, 1998; Gester&Hajek, 2002; Katsiaficas, 1987; Harman, 1988)’, ‘68운동(Gilcher-Holtey, 2005; 이성재, 2009)’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판단이 최대한 배제된 ‘68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도민영(2012), 68운동의 경제적 영향).

2) 베이법(Veil). 1975년 5년간 일시적으로 임신 10주 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 1979년 낙태가 영구적으로 합법화.

3) 이성재(2009). 비주류였던 락(Rock)과 제3세계 음악에 열광.

골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 나서. ‘개혁 좋다. 소란 안된다’(Arnaud Bureau, 2012)를 언급하며 최대한 자제하기를 당부했고 추후에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학생들의 대학개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다.

이러한 결과물로서 1968년 9월 21일 프랑스 고등교육기본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고, 이후 상하원 논의를 거쳐 찬성 441표, 반대 0표, 기권 39표(민유기, 2013, p. 207)로 통과되었다. 기권표는 법안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라 판단한 의원들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고등교육기본법 제 1조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켜, 1968년 11월 13일 공포되었다.

“대학은 의지와 학업 능력이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연구자들은 공정한 조건 하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한다. 더불어 대학은 전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에 입학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학업능력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민유기, 2013, p. 208)

따라서 고등교육기본법(일명 포르법)은 ‘68운동’의 소산으로 자율과 참여를 적극 수용하였다. 법안에는 대학 입학에 대한 선별 시험이나 대학과정 학년 진급 시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선출된 교수와 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연구단위 운영위원회와, 단과대 및 대학운영위원회는 자율과 참여의 토대였다(Ibid., p. 209). 이러한 법안 시행 후 계속 조치로 1968년 12월 파리 서쪽, 뱅센느 대학<sup>4)</sup>이 개교하여 고등학교 미 졸업자에게도 개방되었고 야간 강좌도 개설되어 직장인 및 외국인에게도 대학 문이 열리게 되었다(박단, 2014).

이와 반면, 한국에서의 대학교는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가 여전히 엄격하고 학령기<sup>5)</sup>에 있는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윤여각, 2000), 선발 기준은 단편적이며 교육과정은 획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규모는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학령기 인구는 줄어들어 대학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역설적으로 프랑스 ‘68운동’과 다른 양상으로 대학의 문호를 개방해야되는 압력이 되었다. 더군다나 주요 선진국들은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 과정을 유연화 하는 개혁을 진행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개인이 누적해온 경험을 법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받는 ‘경험학습인증제’를 통해 학위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했고, 영국 대학에서는

4) 이성재(2009). 68운동. 책세상. 뱅센느 실험 대학(현재의 파리 8대학)은 정신 분석학, 여성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과를 설치해 통합 교육을 지향했다. 이 대학에서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1926-1984), 질 들뢰즈Gilles Deleuze(1925-1995) 같은 당대의 진보 성향 학자들이 교수로 활동했다.

5) 황양주와 최유성(2011, p. 4). 학령인구란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의 인구를 말한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대학교는 18-21세 인구를 각각 합산한 것이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Pro vice-master(PVM)를 임명하여 부 총장급에서 대학 평생교육체계를 지원하고 있다(윤여각, 2000). 따라서 한국 고등교육 체계를 쇠신하고자 함은, 한국대학 평생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교육가치 확대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68운동의 배경<sup>6)</sup> 및 전개과정 그리고 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평생교육을 올바르게 축성해 주는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능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68운동의 접근과 의의를 두고 문헌조사 및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논한다. 또한 프랑스 68운동에 대한 발단과 진행과정 그리고 다국적 영향에 대한 의미 파악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68운동이 지니는 평생교육학적 의미를 찾아서 프랑스 대학개혁이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점과 한국 고등교육 현실을 대비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 2장에서는 프랑스, 1968년 5월 운동의 배경 및 전개과정 그리고 정책변화를 고찰하며, 3·4장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내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프랑스 68운동 인식이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능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논거를 요약하며 결론 맺고자 한다.

## II. 프랑스 68운동의 배경 및 고찰

### 1. 프랑스 1968년 5월 운동 이전의 교육환경 및 정책

프랑스의 대학생 수는, 2차 세계대전(1939.09.01.-1945.09.02.)까지만 해도 10만명 미만이 었다(고원, 2004). 그리고 대학교 입학은 경제력 있는 소수 집단에게만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세계적 경제 팽창과 완전 고용에 대한 토대 형성, 그리고 개인소득 증가와 전문인력 양성의 사회적 요구로 대학은 적극적으로 입학생을 늘려갔다. 따라서 60년대 초반에 이미 50년대의 두 배가 넘는 20만명이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68년엔 무려 50만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대학교는 늘어난 만큼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자재가 부족하여 강의실은 늘 만원이었다(고원, 2004, p. 136).

6) 68운동은 제국주의적 냉전을 질타하는 정치적 시위를 넘어 세계의 우애와 직접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철학·예술·문학·사회·여성·교육 분야로의 해석과 평가 그리고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이에 대학 진학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교육부 장관 푸세(Christian Fouchet)<sup>7)</sup>는, 고등 교육을 새로 정비할 구상으로, 드골의 ‘대학 고등교육 실패를 줄이고 좋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생 입학 선별’ 원칙(Didier Fischer, 2000: 민유기, 2013, p. 194 재인용)을 시행하고자 1964년 9월, ‘대학의 학문 직업교육별 전문화를 위한 전공 개설<sup>8)</sup>·교양-학사-석사 3단계 설정<sup>9)</sup>·선별 입학시험을 통한 대학생 수 통제’(Ibid., p. 194)의 고등교육 개혁안을 공개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분할된 소규모의 강의 증편, 실습 위주 교육도입, 시설증대 및 행정 관리자가 더 필요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오제명 외, 2006, p. 54)하여 문제와 불만을 야기(惹起) 시켰으며, 선별 입학에 관한 사항은 푸세 공교육부 장관 임기내내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분쟁만 일으켰다. 이에 교육 공무원 및 교수 그리고 연구자들의 주체적 모임인 ‘과학연구확산을 위한 연구회’(민유기, 2013)는, 1966년 11월 프랑스 캉(Caen)에서, 기존 대학의 운영 방식을 반대하며 대학 개혁을 촉구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다.

“1. 자율적 실험대학 설립 2.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학협력을 위한 공공규약 제정 3. 단과대 사이의 폐쇄성 극복 4. 최대 2만 명으로 대학정원 조정 및 파리 지역 내 15개 대학 조직으로 개편 5. 제한된 임기로 선출되는 학장·학과장 및 연구소장으로 단과대 행정구조 재조정 6. 학문 업적에 따른 교수 임명 7. 연구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8. 기초 연구와 신생학문 연구 지원 9. 대학 병원 개혁 10. 산학연구 프로그램의 체계적 확립 11. 도서 및 연구 자료 제공 확대 12. 모든 연령대에 대한 보편 교육 실시 13. 교수 경력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14. 교사 양성 시스템 재검토 및 학제간 연구소 설립 15. 평생교육·원격교육·박물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 확대.”<sup>10)</sup>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 이후 프랑스 대학은 푸세의 고등교육개혁 시행령에 따라 교육시간 조정 및 평가 제도를 힘겨이 구축해가며 입학과 진급에 대한 선별 방침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1968년이 되어서도, 시설 증대와 행정구조 개선은 미약했고 학생들은 세분화된 전공 교과로 수강 선택에 대한 자유 박탈과 사회 진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다(Antoine Prost, 1989: 민유기, 2013 재인용). 결국 1968년 5월, 학생들은 통제된 학

7) Christian Fouchet(1911-1974, 정치가·공군 조종사·해외대사·의원·드골주의자). 공교육부 장관역임(1962년 11월 28일 - 1967)

8) 66년, 단기 기술대학(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설립 시행

9) 67년, 일반대학 2년 교양과정 - 1년의 학사과정 - 1년의 석사과정 체계

10) Association d'etude pour l'expansion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66: 민유기, 2013, p. 195 재인용

교 규범에 분개하여, 격한 시위로 변모 되었고, 파리대학 법경대·파리 정치학고등연구소·파리의대·파리 인문사회대·파리 동양어학대·콜베르 고교·알로방 이과대·오르세 대학·낭테르 경제학대·클레르몽페랑 대학 등의 학생회가 협의한, ‘1968년 5월 대학선언’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Bernard Grand, 2008: 민유기, 2013, p. 203 재인용). 협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 이러한 내용은 프랑스교육노조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프랑스 교육 당국은 결국 시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표 1〉 1968년 5월 대학선언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총회는 대학개혁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함을 엄숙히 선언한다.

I. 이의 제기의 독립성	
a.	대학은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b.	대학은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이의 제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교수·대학 내 노동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조직된 논쟁들과 정보는 이러한 이의 제기의 기본 수단이다.
c.	각각의 고등교육기관 내부 규정은 이러한 원칙과 소수자의 존재 및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II. 자주관리	
a.	현 사회에서 미래사회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한 등록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b.	교육은 어떠한 선별 없이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c.	고등교육기관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교수와 학생 대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d.	국가로부터 교육에 제공되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중장기적 사회경제적 계획 속에서 표출되는 국민 전체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	완전한 자율은 교수와 학생의 대학 기능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을 무력화할 현실적인 조직 구성을 필요로 한다.
III. 자율결정	
a.	학생과 교수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b.	대학은 사회문화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c.	현행 시험과 경쟁을 폐지하고, 교육 전 기간에 걸쳐 학생의 학습 질에 대한 지속적 검사로 대처해야 한다.
IV. 자율영속	
a.	연구와 교육의 긴밀한 결합
b.	평생교육
c.	노동자와 교수의 주기적 재 연수, 교수의 연구를 위한 완전한 자유 보장

## 2. 프랑스 68운동 배경 및 전개과정

1964년 파리 북서쪽에 개교한 낭테르 대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개교 첫해부터 학생은 이미 1만 5천 명에 달했고 세세한 기숙한 규정,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교과, 위압적이고 가부장적 분위기로 불만이 적체되어 있었다. 결국 낭테르대학 사회학과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1967년 11월 수업 거부로 시작점으로 공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면담이 무산되자 이 문제는 파리의 모든 대학들의 공감대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시류에 대응코자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감시 목적으로, 사복 경찰을 통한 사찰과 폭동 진압 경찰의 학내 진입을 요청해 받아들였다(오제명 외, 2006, p. 20).

그러던 중 미국의 베트남 반전 시위와 맞물려 학생들의 불만과 저항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968년 3월 20일 밤, 파리의 대학생 8명은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항의하고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사무실을 기습하여 미국 국기를 불태웠고 다음날 체포되고 만다. 그런데 이들 중 낭테르 대학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낭테르 대학 학생들은 3월 22일 학우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와 동시에, 강의실 및 총장실을 점거하여 자본주의·기술 관료주의에 물든 대학과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중립적 지식 행태에 대한 교육여건 그리고 교육과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 집회를 '68운동'의 기원으로 대체적으로 본다.<sup>11)</sup> 그래서 낭테르 대학의 학장은 3월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잠재우고자 1968년 4월 1일까지 휴강하기로 결정한다(이성재, 2009). 그러나 교육이 재개된 이후에도 갖가지 선동과 낙서로 얼룩진 학교는 휴·개강을 반복하다 마침내 5월 2일 낭테르 대학이 폐쇄된다.

그러자 학생들은 5월 3일 프랑스 파리의 대학 중심부인, 소르본느(sorbonne)<sup>12)</sup> 대학에 집결하여 대대적으로 항의한다. 반면 소르본느 대학 총장은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 당국의 개입을 요청했고, 학생들은 경찰 체포에 맞서 바리케이드 설치와 데모로 충돌하여 527명이 넘는 학생을 구금하여 심문한다. 그리고 소르본느 대학마저 폐쇄되어 버린다(오제명 외, 2006). 그렇지만 무장 경찰들이 학생들을 마구 구타하는 장면이 TV로 방영되어, 프랑스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아 학생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에 동조해 '전국프랑스학생연합'과 '전국고등교원조합'은 무

11) 도민영(2012). 5월 혁명의 구체적인 시발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 출입 금지에 대한 분노가 시초라는 의견.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유리창을 깨 사건이 시초라는 의견. 하지만 낭테르 대학의 '3월 22일' 비로서 68년 5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견해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다.

12) 고원(2004). 1257년 루이9세의 궁정사제인 로베르 드 소르봉(Robert de Sorbon)이 파리에 세운 콜레주 드 소르본느에서 유래한다. 1968년 11월 파리대학이 12개 캠퍼스로 개편되기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파리대학 문리대를 지칭하는 용어.

기한 휴업으로 합세한다. 그리고 5월 6일 시위에는 노동자·실업자·고등학생이 합세하여 처음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시위 인원은 1만 명에 이르게 된다.

더군다나 5월 10일은 '1968년 5월 10일의 코뮌'<sup>13)</sup> 혹은 '바리케이드의 밤'<sup>14)</sup>으로 불리우며 경찰의 무차별한 진압과 10여년의 드골 정부의<sup>15)</sup> 권위적 지배체제를 맹렬히 비판한다. 그러다 5월 13일을 분기점으로 학생운동은 노동자 운동으로 확산되어, 14일 르노 자동차 공장 및 남부 항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며 대학생들은 "당신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Ibid., p. 30)이라고 칭하며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적극 지지한다. 그렇지만 이후에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은 이념 차이로<sup>16)</sup> 분리되어진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격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5월 25일에 타협안을 내밀어, 노조 지도부는 27일 최저임금 35% 인상·평균임금 10% 인상에 대한 그르넬<sup>17)</sup> 협상을(신동규, 2013) 타결한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는 일반 노동자들에게 집회와 파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나. 일반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는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안정 욕구와 여론의 반대로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러면서 5월 30일, 드골은 라디오 4분 30초 연설과 함께 혼란한 정국 타개를 위해 의회를 해산하며,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던, 개혁찬성·소란반대 원칙에(민유기, 2013, p. 207) 의거하여, 학생들이 요구한 대학개혁을, 7월 새로운 공교육부 장관 임명과 더불어 새로운 고등교육기본법을 마련해 1968년 11월에 공포하게 된다. 반면 드골은 1968년 5월 운동 이후, 6월 선거에서도 의외의 압승을 이루어내지만 다음해 1969년 자신의 신임과 지방 개혁안을 묻는 국민투표 부결로 1969년 4월 27일 사임하게 되어, '68운동'도 드골과 함께 최종 일단락되었다.

### 3. 프랑스 1968년 5월 운동 이후의 교육환경 및 정책

프랑스 68운동은 기본적으로 대학 위기에서 반발되었다. 그리고 기존 대학 체제로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드골 정부는 1968년 7월 6일, "대학의 전면적인 개혁 및

13) 오제명 외(2006). 1871년 3월 18일 - 5월 28일에 파리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봉기로 세워졌던 파리의 혁명적 노동자 정권인 파리 코뮌에 비유.

14) 이성재(2009, p. 40). 엄숙하고 냉혹하기 보다는 다소 낙관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 집단적이면서 자발적인 행동, 자기표현, 상대방과의 의시소통, 사랑같은 정신들이 한없이 고양.

15) 오제명 외(2006). 드골은 1958년 제4공화국을 쓰러뜨리고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간접선거제를 직접선거제로 개헌하는데 성공했다.

16) 이성재(2009). 5월 22일 추방령이 내려진 다니엘 콘 벤디트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에 노동총연맹은 거부.

17) 파리의 '그르넬'가 지명.



작동이 학생과 교수들의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민유기, 2013, p. 205)며 7월 12일, 에드가 포르(Edgar Faure)<sup>18)</sup>를 공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특히 포르 장관은 두 딸이 68운동에 참여한 것을 보았으며 ‘68운동’이 ‘권위에 반대하는 문화혁명’임을 파악했다(Ibid., p. 207). 따라서 1968년 7월, 68운동이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개강에 맞춰 다시 대학 문을 열기위해 포르 장관은 담당 공무원을 프랑스 교육노조·파리대학학장·학생대표와 접촉하게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68년 7월 24일 고등교육 개혁법안(안)을 만들어 프랑스 하원에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중앙 집중되고 권위적인 나폴레옹 시대의 대학 개념은 낡은 것이기에, 가능한 빨리 마지막 흔적들을 사라지게 해야한다.”<sup>19)</sup>고 말한다. 그리고 이전 푸세 공교육부 장관이 시행하고자 한 선별시험 구상을 확실히 포기하겠다고 밝힌다(민유기, 2013, p. 206). 이 법안이 하원에 소개되자 곧바로 프랑스 교원노조와 정부는 협의를 시작했고 최종안은 교육최고심의회를 거쳐 1968년 9월 21일 하원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교육 공적자금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대학내부 노동조합 활동 및 정치에 관한 표현 자유 보장에 대하여, 드골은 심히 우려하였다. 그렇지만 포르 장관은 진중하게 드골을 설득하였고 11월 12일 상하원 논의를 거쳐 11월 13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Ibid., p. 207).

포르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으로서, 1장 고등교육의 목적, 2장 대학제도, 3장 행정자율과 참여, 4장 교육자율과 참여, 5장 재정자율, 6장 교수, 7장 대학교류, 8장 개별실행, 9장 개별조항으로 기술되어 있다<sup>20)</sup>. 그중 1장 1조 내용은 평생교육학적 함의로 자세히 드러내어 봐야 한다.

“대학의 목적은 지식 생산 및 전수, 연구의 발전 그리고 인간 양성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의지와 학업 능력이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각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모든 분야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공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교수와 연구자는 독립적이고 창조적 지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정한 조건 하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할 수단을 보장받고, 학생은 균등하고 구체적인 조건에서 문화, 스포츠, 사회적 활동을 보장

18) 에드가 포르(Edgar Faure, 1908-1988, 변호사 정치인). 특히 1970년 유네스코 국제교육개발위원회(ICD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위원장으로서 1972년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Learning to Be’ 보고서(Faure report) 제출.

19) Edgar Faure, L'Education nationale et la participation: 민유기 2013, 재인용.

20) Lio n 68-978 du 12 novembre 1968 d'orientaion de l'enseignement superieur, journal Officiel, 13 novembre 1968: 민유기 2013, 재인용.

받는다. 대학은 전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하며 입학 기회를 놓친 이들도 학업능력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sup>21)</sup> 더불어 2장·3장·4장·5장·8장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II-2>.

**<표 2> 11월 13 공포, 프랑스 고등교육기본법안 일부 상세내용<sup>22)</sup>**

2장 대학제도
· 기존의 학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연구단위' 설치 및 학제적 교육을 강조
3장 자율행정과 참여
· 선거를 통한 교수·학생 대표의 교육연구단위위원회 및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 교수 대표단에는 교수를 60%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강사에게 할당하기
· 위원회 파견 학생 대표 선거에 외국인 학생 참여 보장
· 기존 단과대별 학장 및 학과장이 대학 행정을 책임지던 방식에서, 대학교 총장직을 신설하고 선거로 선출할 것
4장 교육자율과 참여
· 교육연구 단위별 교과과정의 내용 및 교수법 자율 결정
· 학생들의 직업체험 연수기회 제공
· 직장인 교육과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학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5장 재정자율
· 국자의 재정 지원
· 다양한 자원 마련 허용
· 교육연구단위와 대학의 자율적 예산 심의 및 사용
· 사후 행정 및 회계 감사
8장 개혁실행
· 68년 말까지 공교육부가 교육연구단위 목록을 발표하면 어떤 교육연구 단위들을 개별 대학에 설치할지 대학별 선거를 통해 결정할 것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따라 파리 대학은 단과대(Faculté) 중심의 대학 체제에서 고등교육 및 연구를 위한 종합대학(Université)으로 개편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입학 선별에 대한 내용이나 학년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선출된 교수와 학생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연구 단위와 대학운영위원회는 자율 및 참여의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다중학제를 통해 각 학과

21) Ibid., P. 208

22) Ibid., P. 208

는 다른 학과들과 실질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직접 강의를 선택하고 전공 및 학과 변경도 가능해졌다(오제명 외, 2006). 따라서 1970년대 초, 번호로 통용되는 현재의 13개 파리대학 체계가 완성된다. 파리 I 대학부터 VIII대학까지는 68년 이전에 파리 시내에 존재하고 있던 단과대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어 확대된 것이며, VIII대학<sup>23)</sup>은 69년 1월, IX대학은 71년 1월, X대학은 '68운동' 진원지 낭테르 대학, XI대학 역시 71년 1월, XII대학은 의대 건물을 기반으로 70년 3월 종합대학으로, XIII대학은 이·과학대 부속 건물을 기반으로 71년 1월 종합대학이 되었다(민유기, 2013, p. 211). 따라서 각 대학 앞에 붙은 숫자는 '68운동'이 남긴 평등의 유산이라고 하겠다(박단, 2014, p. 15).

### Ⅲ. 한국대학 고등교육 정책 및 현황

#### 1. 한국대학 고등교육 환경 및 문제점

고등교육이라 함은, 학교 교육의 최종단계로서 초등·중등 교육에 이어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을 말하며(고정, 2015), 대학교육과 대학원 교육 등을 총칭한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나라 대학교육 변천과정<sup>24)</sup>을 살펴보겠다. 1945년-1960년대는 대학교육의 정초기로서 미국 주립 대학체제를 본뜬 국립종합대학 성격의 미국식 대학교육제도가 이식되었고 1960년-1970년대는 대학교육의 통제 시기로서 군사 쿠데타로 탄생한 군부 정권은, 대학 정비를 명목으로 일련의 대학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반면 1970년-1980년대는 대학교육의 전환기로서 실험대학<sup>25)</sup>의 운영과 대학 특성화 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졸업학점의 감축, 계열별 신입생 모집, 부전공 복수전공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1980년-1994년대는 대학 입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과외 금지조치·대학입시 본고사 폐지·대학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현

23) 파리VIII대학(뱅센느 대학). 뱅센느대학 개교는 68운동의 가시적 성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성과(2014, 박단, p. 21).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개방대학'과 비슷한 의미의 대학. 그러나 또 하나의 소외된 기관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사회교육원'이란 통속적 의미가 아닌 일반 대학 형태로 만들었다(Ibid., p. 16). 또한 프랑스 철학자(자크 데리다, 정신분석학 자크 라캉, 문학이론가 롤랑 바르트 등)를 영입하여 당대 최고의 교수진으로 배치하였다.

24) 고정(2015). 일반적으로 교육 50년사(1945년-1995년) 구분 방식을 기본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다.

25) Ibid., p. 30. 실험대학은 대학의 자율화 규제, 교육운영의 융통성 인정, 점진적 개혁 등의 원칙에 입각.

재까지는 대학종합 평가제와 학점운영의 다양화 및 대학등록금의 차등화를 통해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정, 2015, p. 37).

그리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추세에 맞춰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80년대 20만명이었던 대학 입학자 수가 1985년대는 30만명, 1995년대는 50만명 그리고 2010년대는 60만명 정도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황양주·최유성, 2011). 따라서 한국 고등교육은 이미 '보편화'<sup>26)</sup> 단계에 들어섰음을 고정(2015)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은 뒤따르고 있지 않다. 특히 2014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sup>27)</sup>이 발표한 통계자료 중 한국 대학교육(경쟁 사회의 요구에 부합 정도)<sup>28)</sup>은 비교 대상 60개국 가운데 53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국가경쟁력 26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보경, 2015). 이는 고등교육 이슈율이 2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그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sup>29)</sup>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는 첫째, 정부 지배구조의 전근대적 운영 및 관리로 개입과 간섭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막음으로서 과거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장창원, 2009). 둘째 압축적 고도성장과 소득 향상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촉진하였으나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셋째, 대학노동시장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능력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학령기 대상의 학생에게만 초점을 둔 입시제도와 커리큘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 넷째, 1995년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학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 준칙주의<sup>30)</sup>'는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 신설을 유발하였지만, 대학서열 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어, 사회경제

26) 미국 학자 트로우(Martin Trow, 1973) 개념 모형. 해당 연령층 취학률이 15% 미만이면 엘리트 단계, 15-50% 대중화단계, 50% 넘어서면 보편화 단계

27) 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스위스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으로 1989년부터 매년 5~6월, 전 세계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

28) IMD 한국 측 파트너 산업연구원이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협회 등으로부터 확보한 100대 기업 우량 기업 명단 등에서 약 2,000명 정도의 기업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회수율 10-20%)

29) 유용식, 2001: 고정, 2015, p. 22 재인용. 고등교육관련 새 학제는 6-3-3-4 학제에 입각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를 미국식 모형으로 전면 개편하며, 대학을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범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대학은 4년제, 의과대학은 예과 2년을 합하여 6년제로 하며, 일반대학에는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두게 한다는 것이었다.

30)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5000명 이상 규모,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대학 설립요건이 있었던 대학설립 예고제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학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한 정책이다.

적 불리한 계층에게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완화하기 보다는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만 가속화 시켰다(김두환, 2015). 또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교수와 시설확충 없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더군다나 1997년 경제위기에 뒤이은 대학 팽창은 오히려 대학졸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졸업장<sup>31)</sup>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노동시장으로 탈바꿈 하게 되는 변화로 이루어진다(Shin, 2010; 김두환, 2015, p. 162 재인용). 더불어 대학교육 이수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Ibid). 또한 대학 정원의 팽창이 자명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인구 추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나 학생 수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경쟁력 없는 사립대학 양상 및 교육 여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대학 교육의 학생 및 학부모 부담 증가와 지방대학 위기를 가져왔다(장수명, 2009, p. 26-32; 김두환, 2015, p. 167 재인용).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의 보편적 목표라 하는 1)기회의 평등을 제공·촉진하고 2)능력과 흥미에 따라 학생의 효율적 선발 및 분류 그리고 3)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Skill) 공급. 4) 능동적 시민권의 수행자로서 능력수련 제공(Van de Werfhorst and Mijs, 2010, p. 409; 김두환, 2015, p. 180 재인용) 등을 제고하며 부적절한 교육구조와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개선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 2.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능 환경 및 문제점

평생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대학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대학이 평생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식기반경제 혹은 디지털경제의 본격적 도래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 되었고, 이에 따라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류장수 외, 2008). 그러나 아직 국내 대학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이 평생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콘텐츠와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정립이 아직 미미하다. 그렇지만 평생교육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 평생교육기능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가장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이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학령기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대학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31) 김두환, 2015, p. 179.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2004년 광복 60주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30년 전(1974년)의 대학졸업장의 가치를 100으로 놓았을 때 2004년 현재의 대학졸업장의 가치를 40대는 40대는 64.7 50대는 59.7로 평가했다.

는 성인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 자체가 지역사회의 학습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영국·미국은 증가하는 성인학습자를 수용하기 위해 입학전형 및 입학경로 다양화, 탄력적 수업형태(야간·주말·온라인·블렌디드 러닝) 및 선행학습의 학점인정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박인섭 외, 2014). 반면 지금까지 우리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대학이념인 수월성과 학문적 전통만을 고수하며 사회교육을 부수적인 기능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저출산 기조와 입학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는, 2011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으로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목표로 '평생학습 중심 대학'을 선정하여 ①성인학습자 비율 확대를 위한 입학 전형 개편(2014년 4%이상) ②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③성인학습자의 편의의 '학사운영' 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평생학습 선도대학'은 ①대학 입학생 중 성인학습자 비율 확대(2014년 10%이상) ②성인학습자 요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③성인학습자 비율 증가를 기초로 한 대학 운영의 지속가능성 모델 창출 ④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성화 모델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박상옥 외, 2012, p. 64).

이외에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독학학위제·학점은행제·시간제 등록제 등을 열거해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제 등록제<sup>32)</sup>는 대학의 교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직장인(현장 근로자)에게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학·연 공동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하게 된 제도이다(Ibid., p. 46). 시간제 등록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당해 학교의 장이 수여하게 되며 대학졸업 학력의 경우는 140학점 이상을, 전문대학 졸업학력의 경우는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획득하면 된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 이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학습자를 위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Ibid., p. 50).

또한 2008년 이후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 중이나 대학체제 개편의 강력한 추동력 미흡하고, 재직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화정책 미비로 여전히 정체 중이다. 따라서 2013년 교육부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하여 개방형 대학(Lifelong Learning &

32) 1996년 도입. 학습결과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고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제한됨. 대학은 정규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통합반과 분리하여 수강하는 별도반을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음(수도권 대학은 합쳐서 10%까지만 허용)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3조)

Open Education)을 촉진하며, 2017년 이후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함으로써 대학 구조 조정에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 내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비율 20% 달성, 평생 학습중심대학 확대운영(12년 25교 → 17년 51교), 경험학습인정제 도입 확대(전문대학의 50%)의 목표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내의, 시간제등록제·입학전형·수업방법 및 연한·정원의 정원·학점인정 및 학위 수여 등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유연성 및 질 관리 방안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필요로 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평생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법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은, 여전히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평생교육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가 무엇인지 탐색을 요하고 있다.

#### IV. 프랑스 68운동이 한국에 주는 대학 평생교육학적 의미

##### 1. 프랑스 68운동 인식이 한국 고등교육에 주는 의미와 방향

프랑스는 1968년 5월, '68운동' 이후 11월에 공포된 고등교육기본법(일명 포르법)은 대학생들의 대학개혁 목소리 가운데 참여와 자율을 수용한 것이었다(Didier Fischer, 2000: 민유기, 2013 재인용). 권위적 옛 대학에 향수를 지닌 보수주의자들은 이 같은 민주적 요소를 지닌 대학 개혁에 반대하였지만, 대학 개혁은 파리8대학(뱅센 대학)의 예처럼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갈 기회를 제공하였다. 파리8대학 외에도 많은 대학이 교육 내용과 교수법 혁신, 교수-학생 관계의 개선, 자율운영 등으로 68년 5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물론 '상상력에 권력을',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자'(민유기, 2013, p. 214)며,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모든 낡은 것들에 대한 변화를 꿈꾸었던 대학의 모습이 '포르법'으로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학 운영의 학생 참여와 자율보장, 대학 진학의 기회를 놓친 노동자들에 대한, 대학 문호의 대대적 개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듯 프랑스 68운동으로 촉진된 대학개혁 과정이 프랑스 교육 전체에 변모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68운동이 한국 고등교육에 어떠한 인식과 시대 흐름의 변화를 각인시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한국 고등교육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 분석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의 정책 학자들은 정책을 크게 민간 활동을 규제하는 규제정책,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배분정책, 체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획득에 관한 추출정책 그리고 순응 확보정책으로 구분한다(김환식, 2006).

“이러한 분류로 고등교육 정책을 분류할 때 ①학교 설립과 폐지·학교 교원의 임면·학생의 선발과 졸업·학사관리 전반은 규제정책, ②정부가 대학에 주는 보조금·각종 조세정책은 배분정책, ③조세정책은 추출정책, ④정부의 각종 홍보정책이나 기관설립 정책은 순응확보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Ibid., p. 6)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학생 선발과 졸업·학사관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관료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거나 폐교함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나 대학 자치에 반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배성인,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하고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Ibid). 이에 맞서, 고등교육 기관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별 선발비율 규제 완화나, 대학입시 자율성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노기호, 2015). 그렇지만 교육부가 규제개혁으로 건의된 사항들 중 수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용된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Ibid., p. 598).

이에 반해, 프랑스의 고등교육법 제14조 1항은 ‘모든 대학 지원자는 그가 선택하는 대학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20조에는 ‘공공 고등교육 기관들은 법 인격을 가지며 교육적·학문적·행정적·재정적 자치를 향유하는 연구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외부 인사들 전체의 협력과 함께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영됨을 보장받고 있다(교육부, 2007). 이런 모습을 볼 때 인위적인 대학입학정원 개입은 학생들의 정원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전체 대학에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운영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기에 국가지원 배분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특정한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정부 규제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배분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급속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사학 재단에 ‘비분배 규제’<sup>33)</sup>를 일부 완화해주는 조치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학재단의 경영 개입을 통해 내면적·비합법적

33) ‘비분배규제’란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과 달리 이윤이 사용자나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조직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경영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사학재단의 설립자 혹은 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배분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통로로 이윤추구가 가능해졌다(장창원, 2009). 이러한 왜곡으로 우리나라 1인당 공교육비 지원은 미국에 비하여 39%(<sup>34</sup>)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배성인, 2015). 이에 반해,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은 전국 91개 대학에 약 130만 명이 재학 중이며 모두 국립이며 법인체이다(교육부, 2007).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또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반공립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응확보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각종 홍보 정책 및 구성정책 등이 해당되며, 행정 지도로 보면 각종 권고·기준안 마련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며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또한 순응확보 정책과 관련이 깊다(김환식, 2006). 이에 반해, 프랑스 대학의 자치(행정·학문·재정영역)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계약제 시행에 의하여 총장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프랑스의 정교한 고등교육체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프랑스 68운동 인식이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기능에 주는 의미와 방향

68운동 이후, 파리 대학체계 개편과 더불어, 파리 8대학으로 지명되는 ‘뱅센느대학’의 출현은, ‘68운동’의 의미를 특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뱅센느 대학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개방대학’ 혹은 ‘사회교육원’등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박단, 2014). 그러나 이 대학을 또 하나의 소외된 기관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성인 재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원’ 형태가 아닌, 일반 대학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Ibid., p. 17). 더불어 일정 정도의 직장 경력이 있으면, 비록 대학 입학 기준에 미달 하였어도 여타의 학생들과 동등한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원, 2004). 또한 고등학교 미 졸업자 및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었고, 특히 야간 강좌가 개설되었기에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박단, 2014, p. 19). 이는 1968년 ‘5월의 사건’ 동안 제기 되었던 사회적 소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교육혁신 변화는, 철학·사회학·수학·문학 그리고 역사 등 다양한 학문적 교수 및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이 가능한, ‘학제간 다학문성’이었다. 특히 행정 영역에서, 프랑스 대학은 정부가 지명한 학장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파리8대학’ 만큼은, 총장·학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두 선거로서 선출된다. 따라서 여기에 모든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한

34) 2010년 동일 구매력(PPP) 기준으로 볼때 미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5,576\$이고, 한국은 9,972\$이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179)

다(Paul Cohen, 2010: 박단, 2014 재인용). 오늘날 우리의 대학 체제를 고려한다 해도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시대를 앞선 것이라 하겠다(Ibid., p. 20). 그렇지만 1980년 8월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파리8대학은, 파리 북쪽 생 드니(Saint-Denis)로 이전해야만 했고 혁신적 대학 운영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대학 발전의 발목이 잡혔다. 게다가 2008-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정부가 공표한 급격한 대학 개혁에 반대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8대학은 ‘모든이를 위한 교육’(박단, 2014. p. 24)이라는 원칙 위에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변화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능 강화에 어떠한 사항에 유념해야 될지 본보기가 된다.

더군다나 국제화·지식경제·정보화 등으로 정리되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고등교육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이 논의되는 것은, 고등교육 발전 단계(엘리트-대중화-보편적)의 마지막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에 진입하면서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 자체에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중 한국 고등교육에 눈에 띄는 변화 추이는, 2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에 준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2014년, 25-34세 집단에서는 68%로 1위인데 반해, 55-64세 집단에서는 17%로, 두 집단 격차는 51%나 되었다. 이는 OECD 평균 격차 16%는 물론, 한국에 이어 세대 간 교육격차가 두 번째로 큰, 폴란드의 29%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OECD 보고서의 상세 지표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교육수준 격차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커졌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대에만 해도 청년세대(25-34세), 연령집단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불과 37%였지만, 2005년-2010년-2014년은 51%-65%-68%로 급격히 늘어난다. 반면 장년세대(55-64세), 연령집단은 2000년대 9% 이후 2005년-2010년-2014년도에는 10%-13%-17%로 고등교육 받은 비율이 소극적으로 늘어난다. 연차가 흐를수록 두 집단 모두 고등교육 경험 비율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교육수준 격차는 오히려 28%에서 41%-52%-51%는 급격히 커지는 추세로 나타난다. 즉 과거의 세대간 학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김태훈, 2015).

이는 청년기에, 대학 입학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에 대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을 주기적으로 순환 반복하도록 하는 연계 모형(OECD, 1974)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30여 년간 빠르게 발달하였지만, 대학 졸업자의 폭발적 증가는 해당 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넘어서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고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반증한다(박상옥 외, 2012). 따라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평생교육 연구자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표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성인학습자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참여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Ibid., p. 29). 또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경제활동과 노동인력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익 창출이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 기회는 개인의 학습 및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가 핵심적 요건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직업생활과 동시에 순환적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프랑스는 68운동 이후, 2004년 평생학습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평생학습<sup>35)</sup>의 범위를 직무의 발전 및 고용상태 유지는 물론 근로자 자신의 발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직업학습 개념은 법률 개정전과 개정 후 큰 차이를 보인다. 법률 L900-1조 개정 전, ‘평생직업훈련(La formation professionnelle permanente)은 국가의 의무이다’에서 개정 후, ‘평생직업학습(La formation professionnelle au long de la vie)은 국가의 의무이다’로 바뀌었고(박태준 외, 2005),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생직업학습 및 순환직업학습 개념에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프랑스의 여러 평생교육관련 법적제도 중 2006년 2월 15일, 시행령에 의해 구체화된 경험학습인정제<sup>36)</sup>를 살펴보면, 이 법안은 니콜페리(Nicole Pery)에 의해 2000년 2월 25일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안된다(전현주, 2013).

제안된 내용을 보면, “유급 노동 혹은 자원봉사를 통한 전문적 경험 활동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경우에 따라서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를 창조해주는 것이다.” 또한 ‘경험학습인정제’ 권리에 대한 원칙은 프랑스 노동법 직업교육관련법 Ⅱ권 900-1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활동적인 삶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학위나 직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Ibid., p. 3)

따라서 프랑스 대학 내에는 경험학습인정제에 관한 부서가 잘 정착되어 있다. 또한 나이와 국적 구분 없이·교육수준 및 직위에 상관없이·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되는 최소한의 3년

35) 박태준 외, 2005, p. 88. 현대의 평생학습 개념은 평생교육, 계속교육, recurrent education 그리고 프랑스의 개념인 education permanente 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 Education Permanente : Hasan, A. (1996). “Lifelong learning”, i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ed, Albert Tuijnman, Pergamon Press Ltd, Oxford, sec. edp, pp. 33-41.

36) (전현주, 2013). V.A.E -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발리다시용 데 자끼 드 렉스페리앙스)이다. 쓰여진 각 단어별로 직역하지만 ‘경험획득인정제’라고 할 수 있다.

경험(직장경험, 자원봉사, 실습)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험학습인정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에 따라 1·2·3·4·5 단계 인정학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중 ‘1의 수준’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5년 이상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석사 2기 과정이나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수준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인포메이션, 오리엔테이션, 카운슬링 등의 업무를 보고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성인들을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교육시스템에서 소외되거나 특별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배려함으로써 전 범위의 근로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학이 좀 더 인간을 존중하는 대학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프랑스 대학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프랑스 ‘경험학습인정제’ 도입에 따른, 한국 대학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제는 한국 대학이 비학령기 성인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령인구 변화추이 <표 IV-1>를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상관없이 196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대학 기관은 1990년(3,66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다.

<표 3>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sup>37)</sup>

연도	총 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령자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960	25,012	3,629	14.5	1,566	6.3	1,417	5.7	1,941	7.8	726	2.9
1970	32,241	5,711	17.7	2,574	8.0	2,101	6.5	2,218	6.9	991	3.1
1980	38,124	5,499	14.4	2,599	6.8	2,671	7.0	3,632	9.5	1,456	3.8
1990	42,869	4,786	11.2	2,317	5.4	2,595	6.1	3,663	8.5	2,195	5.1
2000	47,008	4,073	8.7	1,869	4.0	2,166	4.6	3,275	7.0	3,395	7.2
2010	49,410	3,276	6.6	1,974	4.0	2,090	4.2	2,672	5.4	5,452	11.0
2020	51,435	2,719	5.3	1,359	2.6	1,370	2.7	2,308	4.5	8,084	15.7
2030	52,160	2,663	5.1	1,333	2.6	1,324	2.5	1,796	3.4	12,691	24.3
2040	51,091	2,378	4.7	1,271	2.5	1,298	2.5	1,751	3.4	16,501	32.3
2050	48,121	1,912	4.0	1,019	2.1	1,092	2.3	1,596	3.3	17,991	37.4
2060	43,959	1,805	4.1	9,06	2.1	910	2.1	1,264	2.9	17,622	40.1

이는 단순히 대학의 줄어든 입학 자원을 채우기 위한 대체 입학자원 확보 때문만은 아니다. 대학교육의 보편화·지식정보사회화·고령화 등으로 오늘날의 고등교육이 모든 연령층에 대한

37)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인구동향과, 2011년

최신의 지식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능을 접목할 것을 요구되고 있다(이희정, 2006).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위를 수여하는 전통적인 대학교육 기능에만 맞추어져 있어, 고등교육 기능변화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박상옥 외, 2012). 그중에서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능 활성화 지표가 될 수 있는, 선행학습 인정제도<sup>38)</sup>와 시간제등록제도<sup>39)</sup>가 있다.

이중 선행학습인정제도는, ‘고등교육법’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에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있어,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수준부터 인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한다. 또한 시간등록제도는 학생 선발과 교과과정 운영은 대학이 관할하고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는 학점은행제에서 관할함으로써 어느 쪽도 교육의 질적 관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박상옥 외, 2012). 그밖에도 정원 외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2조에서, 대학이 정원 외로 성인 및 재직자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문대학과 모든 4년제 대학이 제외됨으로써 우리나라 대다수 성인 재직자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4년제 대학이 성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변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만약 법제도적 틀에서 불가능하다면 프랑스의 ‘68운동’ 이후 대학 개혁의 법안처럼 한국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기능은 실질적 변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 68운동의 배경과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 평생교육기능 강화에 주는 올바른 의미와 방향 축성(促成)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68운동의 평생교육학적 접근과 의의를 두고 문헌조사 및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전히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가 엄격하고 학령기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위기를 인식하고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통해 프랑스 ‘68운동’ 배

38) 선행학습인정제: 성인이 대학에 가기 전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대학에서의 중복학습을 피하고 학습 시간과 비용의 절감으로 대학에의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한 제도.

39) 시간등록제: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전일제로 대학에 가기 어려운 성인들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경 및 발달과정 그리고 1968년 5월을 기점으로 한 프랑스 고등교육 환경변화 및 정책 입안을 살펴보았다. 반면 3장에서는 프랑스 고등교육 체계와 대비되어진,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 및 문제를 탐색하는 동시에 한국 고등교육 평생교육기능에 대한 세부적 고찰을 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4장에서는 프랑스 68운동 인식이 한국 고등교육에 주는 평생교육학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평생학습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이라 함은, 교육의 최종단계로서 초등·중등 교육에 이어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세에 맞춰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이미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그동안 압축적 고도성장과 소득 향상으로 고등교육의 양정 팽창을 촉진하였으나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또한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안 이후 변화됨이 없는 고등교육 정책은 정부의 고등교육의 세세한 개입과 간섭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고등교육은 프랑스 68운동 이후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성·참여·다중학제를 대전제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나폴레옹 시기에 형성되고 제3공화국(1880년-90년대)에 정비된 전통적 프랑스 대학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지식 창출과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 교육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가 여전히 엄격하고 학령기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적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과 장년세대간 교육격차가 과거에 비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1968년 5월 운동 이후, 11월 공표된 프랑스 고등교육 기본법 제1조 ‘대학은 의지와 학업 능력이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각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명시로, ‘입학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학업능력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적요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1968년 12월에 개교한 파리8대학은 고등학교 미 졸업자에게도 개방되었고 야간 강좌도 개설되어 직장인 및 외국인에게도 대학 문이 열리게 되었다. 프랑스 대학은 이미 대학교육 평생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 과정을 유연화 하는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수월성 제고와 교육가치 확대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기능에 대한 확대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계속 학습자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위과정만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제 지식기반경제 혹은 디

지털경제의 본격적 도래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고등교육의 전통적 의미와 시·공간의 장벽은 유의미 하지 않게 되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국내 입학자원 축소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고등교육법 23조 1항 제6호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되었던 선행학습경험인정제도가 2017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되는 등 변화는 있지만 더 넓은 측면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프랑스는 68운동 이후 2004년 평생학습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법위를 직무의 발전, 고용상태 유지는 물론 근로자 자신의 발전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래서 대학이 유급 노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적 경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패러다임 인식 전환과 평생교육기능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제가 대두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프랑스 상황을 토대로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제도) 및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제도 및 운영방안 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2015).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원(2004). 68년 5월과 파리 대학. 대학의역사와문화. 창간호. 133-146.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 김난수 외(1985). 평생교육론. : 문음사.
- 김두환(2015). 한국 고등교육팽창의 한계. 사회사상과문화. 18(3), 139-186.
- 김진화, 강은이, 전은선(201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용어의 분리적 탐구와 학문적 개념화. 평생교육학연구. 18(2), 49-79.
- 김태훈(2015). 교육격차가 정치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향신문.
- 김현정(2016). 정원감축에 방법 짝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교육의 질 저하뿐. 뉴스1.
- 김환식(2006). 고등교육정책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9(4), 4-13
- 노기호(2015).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현황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17, 567-600.
- 도민영(2012). 68운동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장수, 최돈민, 윤여각, 양병찬(2008).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방안 연구. 교육부.
- 민유기(2013). 68년 5월 운동과 프랑스의 대학개혁. 프랑스사연구. 29. 189-216.
- 박단(2014). 68혁명과 '새로운 파리 대학'의 출현. 서강인문논총. 41. 5-27.
- 박상옥, 노경란, 이은경, 장환영, 현영섭, 엄보현, 유민선(2012).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탐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인섭, 이경아, 임현민, 임숙경, 오창환, 김정환, 박성희, 이성희, 이동섭, 김윤정(2014). 대학의 평생교육 해외선진사례 심층 조사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배성인(2015).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공공성. 민중언론 참세상.
- 신동규(2013). 사회보장제도, 그르넬 협상, 그리고 1968년 5월-6월 총파업. 역사와담론. 68. 333-367.
- 신승환(2015).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 살림
- 오제명 외(2006).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 길
- 윤여각(2000). 평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혁 방안 연구. 교육부.
- 이보경(2015). 대학에게 자율을 주고 책임을 물어라.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
- 이성재(2009). 68운동 : 책세상
- 이희정(2006). 고등교육법 개정방안에 관한 소고. 교육법학연구, 18(1), 137-173.
- 장창원(2009). 선진한국을 위한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선진화정책연구. 1. 1-25.
- 전현주(2013). 프랑스 평생학습의 제도와 현장, 경험학습인정제, 개인의 경험이 학위 인정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



- 조용탁(2015). 갈 길 먼 대학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 이번엔 성공할까.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황양주, 최유성(2011).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Arnaud Bureau(2012). 68년 5월 혁명(해바라기프로젝트 역). : 휴머니스트. (원저 2008년 출간)  
Ingrid Gilcher-Holtey(2015).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정대성 역) : 창비. (원저 2009년 출간)

논문접수일: 2018년 1월 22일

논문심사일: 2018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5일

*ABSTRACT*

The meaning of the 'May 68' from continuing education Perspective.

Yi, Sung Yup (Ajou University)

This study, through 'May 68' was sparked by complaints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policies of the University, was to present the correct forcing Korea to give meaning and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This first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May 68' and May 1968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French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environment. Then, no change since 1995, was to recognize the crisis in Korea higher education systems and functions. Also explore the French university system and institutional been built since the new 'May 68' and analyzed the acceptance polici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missed opportunity. In this, it was to find a high-quality lifelong learning how to manage features of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ions.

**[Key words]** May 68, Higher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